

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 : 심기보 의원 외 6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12년 6월 1일
- 회부일자 : 2012년 6월 5일

3. 제안이유

-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기업 및 단체 등으로 확대하여 보조금 및 행·재정적 지원과 세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공공시설 이용 및 문화행사 등에 참여 시 우대조항을 신설하여 다자녀 가정의 우대 풍토 확산
- 저출산·고령사회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도내 기관·기업체 CEO로 구성된 포럼운영 신설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 내용을 수정 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다자녀 우대풍토 확산을 통한 출산 장려 유도(안 제 11조)
 - 세자녀 이상 가정에 공공시설 이용 및 문화행사 등에 참여 시 할인혜택 부여
-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내용 수정(안 제12조)
 - 출산장려의 날 → 인구의 날
- 지원대상을 민간단체 및 기업 등으로 확대(안 제13조)
 - 민간단체 → 민간단체 및 기업 등
- 저출산·고령사회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기관·기업체 CEO로 구성된 포럼운영(안 제13조의2)

- 알기 쉬운 법령기준 일부 자구 수정(안 제15조제4항, 제17조제1항)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 개정의 동기 및 필요성

- 동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와 출산 지원시책 등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및 CEO포럼 운영 등을 통해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시키고,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일부 조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

나. 세부 내용별 검토 의견

- 다자녀 우대풍토 확산을 위해 세자녀 이상 가정에 공공시설 이용 및 문화행사 등 참여 시 할인혜택을 부여하였고,
-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종전 ‘출산장려의 날’을 ‘인구의 날’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,
- 출산지원 시책 등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에만 지원하는 보조금 등을 기업 등으로 확대하였고, 저출산·고령사회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기관·기업체 CEO로 구성된 포럼 구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 하는 등 타당하다고 사료됨.